

건축 인허가(민원팀)

건축허가 신청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상 ○ 도시외지역 : 연면적이 200㎡이상 또는 3층 이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 		
신청방법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www.seumter.go.kr)		
처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이하 또는 1,000㎡ 미만 건축물(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 5일 - 3층 이상 10층 미만 또는 1,000㎡ 이상 5,000㎡ 미만인 건축물(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 7일 -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총10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법 제11조		
<p>□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p> <p>1. 구비서류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축허가 신청서 ②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③ 건축허가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④ 정보통신 및 설비관련 서류 ⑤ 오수정화조 및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⑥ 관련법령에 의한 협의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⑦ 대지의 범위와 소유권에 권리를 증빙하는 서류 ⑧ 구조안전및내진설계확인서, 구조계산서(구조안전 확인서 제출대상에 한함) <p>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축허가 : 9,000원 ~ 100,000원 ② 면허세 : 6,000원 ~ 30,000원 ③ 국민주택채권 			
<p>□ 처리절차</p> <p>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실무종합회의 ⇒ ④ 결재 ⇒ ⑤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 ⑥ 민원인</p>			

착공신고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면 중 제1면)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건축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재축 <input type="checkbox"/> 이전 <input type="checkbox"/> 대수선
	<input type="checkbox"/> 허가사항 변경 <input type="checkbox"/> 용도변경 <input type="checkbox"/>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	자격번호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M)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폐율	%	연면적 합계	m ²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m ²	용적률	%
④ 건축물 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총 주차대수
		호	
		가구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전용면적			
			m ²

신청대상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www.seumter.go.kr)		
처리기간	1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제1항		
<p>□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p> <p>1. 구비서류 제출</p> <p>①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p> <p>② 흠막이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 설치하는 경우)</p> <p>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음</p>			
<p>□ 처리절차</p> <p>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교부</p>			

착공신고서

•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면중 제1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④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해당 없음			
⑤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

신청대상	○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		
신청방법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www.seumter.go.kr)		
처리기간	1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제출 -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 증명서류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 ⇒ ⑤ 민원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	------	------	------	---

신청구분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허가(신고)번호			
대지위치			

① 건축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② 공사감리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자격번호 :)	(자격번호 :)
사무소명	(신고번호 :)	(신고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감리기간	~	~
최초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잔여계약금액
		원

③ 공사시공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명		
회사명	(면허번호 :)	(면허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시공기간	~	~
최초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잔여계약금액
		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착공연기 신청

신청대상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착수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		
신청방법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www.seumter.go.kr)		
처리기간	1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p><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p> <p>1. 구비서류 제출 : 없음</p> <p>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처리절차</p> <p>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교부</p>			

착공연기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신청내용	착공예정일자			
	연기사유			
		년	월	일

「건축법」 제11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부서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단서	•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작성방법			

- 착공예정일자 : 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자를 기재합니다.
- 연기사유 :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신청대상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신청방법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www.seumter.go.kr)		
처리기간	5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p>□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p> <p>1. 구비서류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승인신청서 ②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③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④ (중간,완료)감리보고서 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⑥ 승강기검사확인증 ⑦ 정화조 준공확인서, 배수설비준공필증 ⑧ 가스완성검사 필증(도시가스공급확인원) ⑨ 건축물관리대장 생성신청서 ⑩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카드 ⑪ 관련법령에 의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p>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p>			
<p>□ 처리절차</p> <p>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현장 조사·검사 ⇒ ④ 결재 ⇒ ⑤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 ⑥ 민원인</p>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8면 중 제1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구분	사용승인 [] 전체 [] 일부 임시사용승인 [] 전체 []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 공사 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기축타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축타를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축타를 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전체개요는 적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로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전체 개요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폐율	%	연면적 합계	m ²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m ²	용적률	%
②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수 동	부속 건축물 동,	m ²
③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호/가구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건용면적 m ²			
④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신청대상	○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www.seumter.go.kr)	
	방문접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실 73, 2층	
처리기간	7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13조제1항		
<p>□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p> <p>1. 구비서류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②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를 갈음할 수 있다) 1부 ③ 토지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p>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p>			
<p>□ 처리절차</p> <p>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결재 ⇒ ④ 건축물대장분리·결합 작성 ⇒ ⑤ 민원인</p>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일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구 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사유
분리	대지위치 (건축물 명칭)			
결합	대지위치 (건축물 명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신청대상	○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 (www.seumter.go.kr)	
	방문접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2층	
처리기간	7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15조제1항		
<p>□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p> <p>1. 구비서류 제출</p> <p>①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p> <p>②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p> <p>③ 건물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1부</p> <p>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p>			
<p>□ 처리절차</p> <p>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결재 ⇒ ④ 건축물대장전환작성 ⇒ ⑤ 민원인</p>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9.16>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집합건축물 대장(표제부)의 기재사항	대지위치	지번	기타사항				
	건축물 명칭·번호	호수					
	주용도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 다른 호에 대한 기재내용은 뒤쪽에 작성하시고, 4호를 초과하는 집합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를 덧붙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1부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등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앞 쪽)

(뒤 쪽)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 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 의 기재사항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 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 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 의 기재사항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 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신청대상	○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하려는 경우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www.seumter.go.kr)	
	방문접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2층	
처리기간	7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16조제1항		
<p>□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p> <p>1. 구비서류 제출</p> <p>①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p> <p>②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등기필증의 제시로 같음할 수 있다) 1부</p> <p>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p>			
<p>□ 처리절차</p> <p>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결재 ⇒</p> <p>④ 건축물대장합병작성 ⇒ ⑤ 민원인</p>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9.16>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일반건축물대장(표제부)의 기재사항				기타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건축물 명칭	주용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²)	비고
건축물					
부속 건축물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현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분할·합병)신청

신청대상	○ 건축물의 소유자가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www.seumter.go.kr)	
	방문접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2층	
처리기간	7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17조제1항		
<p>□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p> <p>1. 구비서류 제출</p> <p>①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1부</p> <p>② 건물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1부</p> <p>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p>			
<p>□ 처리절차</p> <p>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결재 ⇒</p> <p>④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 작성 ⇒ ⑤ 민원인</p>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9.16>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건축물 명칭				

분할 · 합병 전 내용						분할 · 합병 후 내용					
호명칭						호명칭					
구분	(주··부속) 건축물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구분	(주··부속) 건축물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전유부분						전유부분					
공용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구분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소유자 현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분할 · 합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분할 · 합병 전 내용					분할 · 합병 후 내용						
호명칭					호명칭						
구분	(주···부속)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²)	구분	(주···부속)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²)
전유부분						전유부분					
공용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소유자현황						

분할 · 합병 전 내용					분할 · 합병 후 내용						
호명칭					호명칭						
구분	(주···부속)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²)	구분	(주···부속)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²)
전유부분						전유부분					
공용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소유자현황						

분할 · 합병 전 내용					분할 · 합병 후 내용						
호명칭					호명칭						
구분	(주···부속)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²)	구분	(주···부속)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²)
전유부분						전유부분					
공용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소유자현황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정정) 신청

신청대상	○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www.seumter.go.kr)	
	방문접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2층	
처리기간	7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p>□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p> <p>1. 구비서류 제출</p> <p>①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p> <p>②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p> <p>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p>			
<p>□ 처리절차</p> <p>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현장확인 ⇒ ④ 결재 ⇒ 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 ⑥ 민원인</p>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 · 정정)전 내용	(변경 · 정정)후 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표시 []변경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신청대상	○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www.seumter.go.kr)	
	방문접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실 73, 2층	
처리기간	즉시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p><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p> <p>1. 구비서류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p> <p>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p>			
<p><input type="checkbox"/> 처리절차</p> <p>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변경 ⇒ ⑥ 민원인</p>			

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변경 · 정정) 전			(변경 · 정정) 후			변동구분
성명(명칭)	주소	지분	성명(명칭)	주소	지분	변동일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동원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정정 을 신청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정정) 신청

신청대상	○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www.seumter.go.kr)	
	방문접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2층	
처리기간	1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p>□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p> <p>1. 구비서류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황측량성과도 1부(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 (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③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p>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p>			
<p>□ 처리절차</p> <p>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결재 ⇒ ④ 건축물대장지번변경 ⇒ ⑤ 민원인</p>			

건축물지번 []변경 []정정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변경 · 정정) 전						(변경 · 정정) 후						변동구분		
대지위치		지번	비고		대지위치		지번	비고		변동일자				
										변동원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지번

{ } 변경 을 신청합니다.
{ } 정정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신청대상	○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처리기간	7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제1항		
<p>□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p> <p>1. 구비서류 제출 - 철거·멸실 전·후의 사진 1부</p> <p>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p>			
<p>□ 처리절차</p> <p>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현장확인 ⇒ ④ 결재 ⇒ ⑤ 건축물대장말소 ⇒ ⑥ 민원인</p>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멸실·철거 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멸실·철거일자	
등기축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말소사유(그 밖의 사항)			
철거시공사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첨부서류	철거·멸실 전·후의 사진 1부	수수료 없음
------	------------------	-----------

자 르 는 선

건축물(철거·멸실)확인서

상기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한 바, 해당 건축물이(철거·멸실)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읍·면·동장) :

인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

신청대상	○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www.seumter.go.kr)	
	방문접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2층	
처리기간	5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25조제1항			
<p><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p> <p>1. 구비서류 제출</p> <p>① 건물등기부등본 후의 사진 1부</p> <p>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p>			
<p><input type="checkbox"/> 처리절차</p> <p>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현장확인 ⇒ ④ 결재 ⇒</p> <p>⑤ 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 ⇒ ⑥ 민원인</p>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1.9.16>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일
------	------	------	------	----

* 대지위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지붕 등은 등기부등본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대지위치(건축물위치)

도로명주소

구조	건축물용도
층수	면적 ㎡
지붕	기타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건물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신청대상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2층	
처리기간	1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 구비서류 제출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흙막이 구조도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민원인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알 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일
신고번호	제 호	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	
	세대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서명 또는 인)

철거 또는 멸실	사유				
	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 월 일

등기축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	-------------

석면함유재 존재여부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바닥재(아스타일 등)	[] 해당없음
	[] 지붕재(슬레이트 등)	[] 파이프로온재(석면포)	
	[] 천정단열재(석면포)	[] 기타	

오수처리시설 철거여부	[] 철거함	[] 철거하지 않음
-------------	---------	-------------

※ **착공신고 관련사항**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주	사무소명 (신고번호 :)	자격번호 :)	성명	년 월 일
설계자	회사명 (면허·지정·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시공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	자격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분야	자격증(자격번호)	주소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신고)

신청대상	○ 건축물의 소유자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시설군 중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은 용도변경허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의 변경은 용도변경신고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www.seumter.go.kr)	
처리기간	7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4조		
<p>□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비서류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전·후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없음 			
<p>□ 처리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실무종합회의 ⇒ 결재 ⇒ 민원인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면 중 제1면)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건축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재축 <input type="checkbox"/> 이전 <input type="checkbox"/> 대수선
	<input type="checkbox"/> 허가사항 변경 <input type="checkbox"/> 용도변경 <input type="checkbox"/>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폐율	%	연면적 합계	m ²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m ²	용적률	%
④ 건축물 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m ²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호/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전용면적 m ²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면 중 제1면)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건축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재축 <input type="checkbox"/> 이전 <input type="checkbox"/> 대수선
	<input type="checkbox"/> 신고사항변경신고 <input type="checkbox"/> 용도변경

①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건축주 (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폐율	%	연면적 합계	m ²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m ²	용적률	%
④ 건축물명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m ²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호/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별 평균전용면적 m ²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건축신고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외지역 :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 ○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 신축 - 높이 3m 이하 범위안에서의 증축 - 공업지역, 산업단지안에서의 2층이하 연면적 합계 500㎡이하인 공장 -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 대수선(연면적 200㎡미만 3층미만에 한함) 등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www.seumter.go.kr)	
처리기간	5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법 제11조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비서류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신고서 건축신고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대지의 범위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의 대지인 경우에 한함) - 건축 동의서(지상권·압류 설정된 토지에 한함) 일괄처리 사항 구비서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신고 : 4,000원 ~ 20,000원 면허세 : 6,000원 ~ 10,000원 국민주택채권 			
□ 처리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실무종합회의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민원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면 중 제1면)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건축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재축	<input type="checkbox"/> 이전	<input type="checkbox"/> 대수선
	<input type="checkbox"/> 신고사항변경신고		<input type="checkbox"/> 용도변경			

①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건축주 (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M)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1. 전체 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m ²	m ²		
건폐율	연면적 합계		m ²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용적률		%
m ²			
④ 건축물명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m ²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연면적 m ²			

착공신고

신청대상	○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www.seumter.go.kr)	
처리기간	1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제1항		
<p>□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p> <p>1. 구비서류 제출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p> <p>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p>			
<p>□ 처리절차</p> <p>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필증작 ⇒ ⑤ 민원인</p>			

착공신고서

•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면중 제1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④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해당 없음
⑤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신고건축물)

신청대상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www.seumter.go.kr)	
처리기간	5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제출

- ① 사용승인신청서
- ② 건축물현황도
- ③ 사용승인신청시 일괄신청하는 서류(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등)
- ④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사본(액화석유가스 사용시)
- ⑤ 건축신고시 부여된 조건 이행사항 증빙서류 사본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관련법 검토 ⇒ ③현장 확인 ⇒ ④ 결재 ⇒
- ⑤ 사용검사필증 작성 ⇒ ⑥ 민원인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8면 중 제1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구분	사용승인 []전체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전체 []일부	임시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 공사 착공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		
	주소		
등기축타 희망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등기축타를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축타를 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항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전체개요는 적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로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전체 개요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폐율	%	연면적 합계	m ²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m ²	용적률	%
②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수	동	부속 건축물 동, m ²
③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m ²			
④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대상	○ 가설전람회장, 공사용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컨테이너 등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청(www.seumter.go.kr)	
	방문접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2층	
처리기간	3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제2항 시행령 제15조제5항,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p>□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p> <p>1. 구비서류 제출</p> <p>① 신고서</p> <p>② 배치도, 평면도 각1부.</p> <p>③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의 대지인 경우에 한함)</p> <p>④ 건축 동의서(지상권·압류 설정된 토지에 한함)</p> <p>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p> <p>① 수수료 : 4,000원 ~ 20,000원</p> <p>② 면허세 : 6,000원 ~ 10,000원</p>			
<p>□ 처리절차</p> <p>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결재 ⇒</p> <p>④ 신고필증작성 ⇒ ⑤ 민원인</p>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4.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본인소유	[] 타인소유
		면적 m ²	

I. 전체 개요

건축면적	m ²	연면적 합계	m ²
준치기간	년	월	일 까지

II.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지상층수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공작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설계자·공사시공자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건축주	성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역		
	지번	지구		
	지목	구역		
* 설계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주소			
* 공사시공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 골돌,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종류	구조	높이 (m)	길이 (m)	면적 (㎡)	건폐율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구조도 1부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부서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개발행위 허가신청

신청대상	○ 개발행위허가			
신청방법	방문접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우편접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2층		
처리기간	15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협의를 필요하 부서 및 기관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p>□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개발행위허가신청서, 별표1 또는 별표2 참조, 국토부 훈령 제315호)</p> <p>1. 구비서류 제출</p> <p>① 신청서 1부(첨부)</p> <p>②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함)</p> <p>③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p> <p>④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p> <p>⑤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 건축이 목적인 경우에 한함)</p> <p>⑥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p> <p>⑦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 분할인 경우 제외).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음</p> <p>⑧ 『국토계획법』 제6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필요하 서류</p> <p>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한 심의 대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서류</p> <p>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p> <p>① 수수료 : 없음</p> <p>② 면허세 : 9,000원~45,000원</p> <p>③ 이행보증금 : 기반시설 등의 설치 총공사비의 20% 이내</p>				
□ 처리절차				
①민원신청 접수 ⇒ ②주관부서 검토 ⇒ ③현지 확인 및 조사 ⇒ ④관련기관 협의 ⇒ ⑤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당시) ⇒ ⑥허가 여부 결정 ⇒ ⑦허가증 작성 및 교부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

[]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 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종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 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종량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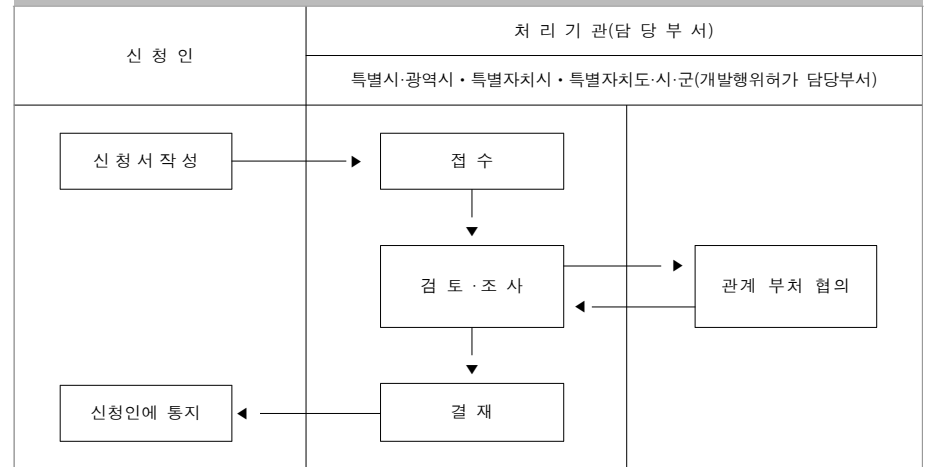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첨부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건축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처리 절차



통신 인허가(민원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신청대상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방법	방문접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우편접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2층													
처리기간	14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p>□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p> <p>1. 구비서류 제출</p> <p>① 신청서 1부(첨부)</p> <p>② 통신 준공설계도서(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p> <p>2. 수수료</p> <p>① 검사 수수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건당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연면적500㎡ 미만 건축물</td> <td>20,000원</td> </tr> <tr> <td>연면적500㎡ 이상~1,000㎡ 미만 건축물</td> <td>30,000원</td> </tr> <tr> <td>연면적1,000㎡ 이상~3,300㎡ 미만 건축물</td> <td>40,000원</td> </tr> <tr> <td>연면적3,300㎡ 이상 건축물</td> <td>60,000원</td> </tr> <tr> <td>재검사 수수료</td> <td>각 해당 수수료의 50%</td> </tr> </tbody> </table>				구 분	건당수수료	연면적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연면적500㎡ 이상~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연면적1,000㎡ 이상~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연면적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구 분	건당수수료														
연면적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연면적500㎡ 이상~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연면적1,000㎡ 이상~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연면적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p>□ 사용전검사 면제대상</p> <p>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p> <p>1. 감리를 실시한 공사</p> <p>2.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p> <p>3.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p>															
<p>□ 검사대상 공사범위</p> <p>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p> <p>1. 구내통신선로설비</p> <p>2. 방송공동수신설비</p> <p>3.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p>															
<p>□ 처리절차</p> <p>① 민원신청 접수(1층 종합민원실) ⇒ ② 서류검토 ⇒ ③ 현장조사 ⇒</p> <p>④ 대장정리 ⇒ ⑤ 사용전검사필증 교부</p>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시공사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 번호	
	영업소 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검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수)	제곱미터/지하_층, 지상_층
착공일		완공일	
검사희망 연월일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작성 방법

※ 연면적: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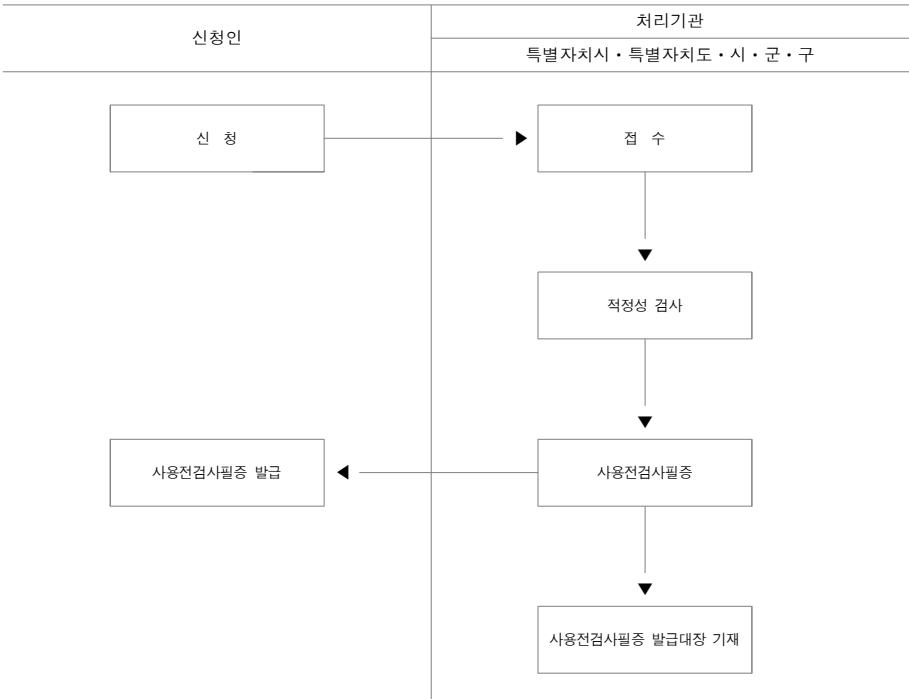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정보통신공사 통신설계도서 사전 확인업무

신청대상	○ 건축법상 건축허가 시(건축법 제11조) 또는 착공전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처리기간	건축허가처리기간(2~20일)		
주관부서	개발과 민원팀(☎8008-8592)	협의부서 (협의기관)	건축과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36조		
<p>□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p> <p>1. 구비서류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신설계도서(설계자의 서명 날인) ② 통신설계도서 설계자 확인서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기술자보유현황, 기사수첩사본 등) <p>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수료 : 없음 			
<p>□ 처리절차</p> <p>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정보통신과 검토 ⇒ ③ 건축과로 결과통보 ⇒ ④ 건축과 결과통보서 교부</p>			

■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16.6.21.>

(앞 쪽)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 일
발주자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건축현장 명칭 및 주소				
공사의 종류		연면적/규모(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설 계 자	상 호		정보통신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시 공 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감 리 자	상 호		정보통신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항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설계자 등록(신고)증		없 음	
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및 규모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및 규모(지하/지상 층수) 기재 ○ 감리자는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대상 공사만 작성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